

『세무와 회계 연구』 편집규정

제정 2012. 3. 23.

개정 2012. 7. 12.

개정 2012. 12. 13.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조세연구소설치 및 운영규정 제2조 제2항 제4호 및 제3조의3 제3항에 따라 한국조세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발간하는 학술지 『세무와 회계 연구』(영문 명칭은 『Tax and Accounting Review』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발간하기 위하여 게재 논문의 제출·심사 및 편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논문의 주제】** 『세무와 회계 연구』에 게재하는 논문은 다음에 제기하는 분야의 주제를 다루는 것으로 한다.

1. 조세법
2. 조세정책 및 행정
3. 국제조세 및 지방세
4. 회계학(세무회계 포함)
5. 세무사 제도
6. 그 밖에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규정과 관련 있는 분야

제3조 **【발간】** 『세무와 회계 연구』는 각각 6월 말(전기)과 12월 말(후기)까지 매년 2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편집위원회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세무와 회계 연구』에 게재하고자 제출된 논문에 대한 심사와 발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와 회계 연구』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연구소의 소장은 운영위원 또는 연구위원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및 간사를 다음과 같이 위촉하며 위원 중 1명을 간사로 한다.

1. 위원장 1명
2. 위원 15명 이내

제5조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을 제외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권한】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세무와 회계 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의뢰와 논문의 게재 여부의 판정
2. 논문의 게재순서의 조정
3. 『세무와 회계 연구』의 편집
4. 그 밖의 『세무와 회계 연구』 발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운영】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재석으로 개최하고, 재석한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논문게재 신청

제8조 【신청대상 논문】 ①『세무와 회계 연구』에 게재신청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②『세무와 회계 연구』에 게재된 논문과 실질적인 내용이 차이가 없는 논문이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중복 게재된 경우에는 논문의 작성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9조 【논문의 제출】 ①『세무와 회계 연구』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4월 30일과 10월 31일까지 전자문서(전자파일)로 편집위원회 간사에게 이메일 혹은 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를 기준으로 하여 15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논문의 작성방법】 『세무와 회계 연구』에 게재하고자 논문을 제출하는 자는 [별지 1] 『세무와 회계 연구』 논문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 4 장 논문 심사

제11조 【심사대상 논문】 심사대상 논문은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세무와 회계 연구』에 게재신청한 논문으로 하며, 이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논문이 제출된 경우 편집위원장은 게재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 【논문심사의 의뢰】 ①편집위원장은 『세무와 회계 연구』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된 각 논문에 대하여 연구소 운영위원 또는 연구위원 중에서 위촉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편집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논문의 심사를 운영위원 또는 연구위원 이외의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심사를 의뢰할 때는 심사위원이 게재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없도록 저자명 등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심사를 완료한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하며, 세부적인 지급금액과 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 【심사위원】 ①심사위원은 다음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최근 2년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등재후보 포함)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
2. 최근 2년간 외국저명 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
3. 최근 3년 이내에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이었거나 현재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인 자

②편집위원장은 심사의 충실도, 기각률(논문심사건수 중 제18조에 따른 ‘게재 불가’ 건수의 비율) 및 심사기일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여 그 다음 연도 이후의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심사의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한다.

1. 논문 내용과 제2조에서 정하는 주제의 정합성(正合性)
2. 논문전개의 논리성
3. 논문의 독창성
4. 문장의 정확성과 각주 처리 및 참고문헌의 활용도
5. 논문의 학문적 기여도

제15조 【심사결과의 판정】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판정할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내용을 [서식 1] 『세무와 회계 연구』 논문심사 보고서에 따라 심사를 받은 때로부터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한 기간까지 편집위원회 간사에게 인비(人秘)로 통보한다. <개정 2012. 12. 13.>

1. 수정이 필요 없을 때 : ‘게재 적합(A)’. 자구수정 등 형식상 또는 사소한 문제에 대하여 편집위원장이 수정사실을 확인하도록 한 경우에도 포함한다.
2. 간단한 수정이 필요할 때 : ‘소폭 수정 후 게재가능(B)’. 게재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를 갖추었으나 논문의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3. 대폭 수정이 필요할 때 : ‘대폭 수정 후 게재가능(C)’. 게재할 수 있는 요소가 희박하고 논문의 전체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논문의 연구방법론을 많이 수정·보완 후 논문의 게재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을 포함한다.
4. 게재가 부적합할 때 : ‘게재 부적합(F)’. 논문의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선행연구의 단순반복 등으로 게재가 부적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 【심사결과의 통보】 ①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이유와 함께 [서식 2] 『세무와 회계 연구』 논문종합심사 보고서에 따라 연구소장에게 보고한다.

②심사의 결과는 논문 또는 수정논문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게재신청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만약 기간 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그 사유와 통보할 시기를 알려주어야 한다.

③제15조 제2호에 따라 ‘소폭 수정 후 게재가능(B)’으로 심사결과가 나온 경우 게재신청자에게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게재신청자는 수정통보를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수정논문(파일)과 함께 답변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재신청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수정보완하지 않은 경우 논문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

정 2012. 12. 13.>

④제15조 제3호에 따라 ‘대폭 수정 후 게재가능(C)’으로 심사결과가 나온 경우 게재신청자에게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게재신청자는 수정통보를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수정논문(파일)과 함께 답변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재신청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수정보완하지 않은 경우 논문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 12. 13.>

제17조 【재심】 ①게재신청자가 제16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수정하여 제출한 논문은 원칙적으로 최초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한다. 이 경우 수정한 논문에 대하여 ‘게재 적합(A)’의 견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게재에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2. 12. 13.>

②제1항의 재심 결과로 게재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3.>

제18조 【최종결정】 ①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②심사위원 간에 심사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 다수의 의견에 따르며, 심사의 공정을 우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 5 장 편집 및 배부

제19조 【논문게재】 ①편집위원회에서 논문게재가 확정된 것에 한하여 『세무와 회계 연구』에 게재한다.

②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의 종결순서 및 분야별 논문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게재할 논문의 게재순서를 결정한다.

제20조 【논문사실의 명시】 ①게재하는 논문에 대하여는 논문접수일 및 게재확정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세무와 회계 연구』에는 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한국조세연구소 운영 및 연구위원의 성명과 소속을 명시한다.

제21조 【연구부정행위】 ①『세무와 회계 연구』에 논문을 게재하는 자와 심사위원이 「한국조세연구소 윤리규정」 제3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②게재신청자는 게재신청한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22조 【논문에 대한 권리】 ①『세무와 회계 연구』에 게재한 논문의 출판권은 한국조세연구소가 갖는다.

②게재신청자는 『세무와 회계 연구』에 게재신청을 함으로써 신청한 논문에 대한 복사권·공중전송권·배포권을 한국조세연구소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23조 【배부】 ①『세무와 회계 연구』를 발행할 때마다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배부한다.

②연구소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세무와 회계 연구』를 외부기관 또는 연구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 【세칙】 『세무와 회계 연구』의 게재신청, 심사 및 편집 등 발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부 칙(2012. 3. 2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7. 1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1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

『세무와 회계 연구』 논문심사 보고서

제 목								
계 재 예정사항	『세무와 회계 연구』 제 집 제 호							
	심 사 구 분			초심 () / 재심 ()				
세 부 심사결과	평가항목 \ 등급	A	B	C	* C 등급이 3 항목 이상이면 계재 불가			
	논문의 체계와 논리성							
	이론적 근거의 충실도							
	논문 내용의 독창성							
	논문의 학문적 기여도							
	문장의 정확성과 각주 처리 및 참고문헌의 활용도							
	원고작성요령의 준수							
최종판정	계재 적합 (A)		소폭 수정 후 계재가능(B)		대폭 수정 후 계재가능(C)		계 재 부적합(F)	
심사의견	◆ 수정사항 - 논문의 구성을 논리적으로 재조정할 것 () - 내용 중 현행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수정 보완할 것 () - 최신의 판례와 현재결정 등을 반영할 것 () - 외국문헌 등의 불명확한 인용부분을 보완할 것 () - 원고작성지침에 맞게 수정 작성할 것 () - 기타 ()							
	◆ 계재불가사유 - 이미 발표된 논문의 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동일한 논문임 () - 학술적 가치가 희박한 성격의 논문임 () -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논문임 () - 그 밖의 사유 ()							

심사위원 소속 및 직위 _____

연 락 처 _____

성 명 _____ (인)

『세무와 회계 연구』 편집위원회 위 원 장 귀하

[별지 1]

『세무와 회계 연구』 논문작성요령

1. 원고작성 일반

- 1) 『세무와 회계 연구』에 게재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원고를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 2) 게재신청 논문은 별지의 논문표지를 첨부해야 한다. 표지에는 국문 및 외국어로 논문제목, 저자명을 표기하고, 국문으로 근무처, 직위, E-mail, 연락처번호, 연구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 원고매수를 표기한다. 저자가 공동연구인 경우 주저자를 구분하고 별도로 교신저자를 표기한다.
- 3) 원고는 논문표지, 논문제목(괄호 안에 외국어 표기), 국문요약문, 외국어요약문, 주제어 표시, 본문, 게재증복신청확인 표시, 참고문헌, 부록(설문지 등)의 순서로 작성한다. 다만, 부록은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 4)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주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고, 주저자·공동저자의 순서로 표기하여야 하며, 연구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목차의 순서

I. 로마숫자 (중양으로, 진하게)

1. 아라비아 숫자 (2칸 들여쓰기, 진하게)

가. 한글 (4칸 들여쓰기, 진하게)

(1) 괄호 숫자(6칸 들여쓰기, 진하게)

(가) 괄호 한글 (8칸 들여쓰기)

1) 반괄호 숫자 (9칸 들여쓰기)

가) 반괄호 한글 (10칸 들여쓰기)

3. 본문의 작성

- 1) 편집용지의 여백주기 (단축키 사용 : F7) 설정
위쪽 : 40, 아래쪽 : 35, 왼쪽 : 35, 오른쪽 : 35,
머리말 : 12, 꼬리말 : 12, 제본 : 0
- 2) 문단모양
왼쪽 : 0, 오른쪽 : 0, 들여쓰기 : 0, 줄간격 : 180, 문단위 : 0,
문단아래 : 0, 낱말간격 : 0, 정렬방식 : 혼합
- 3) 글자모양
서체 : 바탕, 자간 : 0, 장평 : 100, 크기 : 10

4. 논문요약문

논문의 요약문은 국문과 외국어로 각각 작성한다. 요약문에는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결과, 연구공헌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 1) 국문요약문 : 700자 이내로 하며 <국문초록>이라고 굵은 글자체로 표기하고 요약문의 내용을 작성한다.
- 2) 외국어요약문 : 국문요약문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Abstract>라고 굵은 글자체로 작성한다.

5. 주제어

주제어(Key words)는 3 내지 5단어 이내로 각각 국문 및 외국어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6. 각주의 표기

1) 문단모양

왼쪽 : 0, 오른쪽 : 0, 들여쓰기 : 0, 줄간격 : 130, 문단위 : 0,
문단아래 : 0, 낱말간격 : 0, 정렬방식 : 혼합

2) 글자모양

서체 : 바탕, 자간 : -5, 장평 : 95, 크기 : 9

3) 저서 인용

저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

4) 정기간행물 인용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제*권 제*호(연도), 면수.

5) 기념논문집 인용

저자명, “논문제목”, ***기념논문 『기념논문집명』(연도), 면수.

6) 판결 인용

대법원 ****.***.*** 선고 **다**** 판결.

또는 대판 ****.***.***, **다****.

7. 게재중복신청확인

논문의 본문 끝에는 두 줄을 띄워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이라고 표기한다.

8. 참고문헌

(1) 단행본의 경우

① 동양서 : 저자, 『책명』, 출판지 : 출판사, 출판연도

② 서양서 : 저자, 책명(이탤릭체), 출판지 : 출판사, 출판연도

※ 저자명은 성, 이름순으로 기재하며, 성 다음에 콤마를 찍는다.

(2) 논문의 경우

① 동양논문 : 필자, “논문명”, 『간행물의 명칭』, 제*권 제*호(발행연월)

② 서양논문 : 필자, 논문명, 간행물의 명칭(이탤릭체), 권수, 호수, 발행연월